전자민원처리공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제출하신 처리내역입니다.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1.민원내용

민원요지 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 조립식 창고가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접수번호 1AA-0808-039615 **접수일자** 2008.08.22

질의내용

http://exmarine.egloos.com/1600802 http://cafe.naver.com/woodwork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391 http://blog.naver.com/keterkorea/70026805390 위 사이트를 보시고, 현재 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 창고가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마다 건축물이라니 아니라니 재각각인듯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예전에 올라온 유사 질문에 확답을 해 놓지를 않았더군요. 만약 위 플라스틱 창고가 건축물인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설계도는 어떻게 구하여야는지(판매자한테 부탁?), 기타 근거 자료도 첨부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자료도 모두 첨부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종이상자(1m*1m*1m) 안에다가 물건을 보관해 놓고(창고용도?) 이 종이상자를 옥상에다가 장기간 올려 놓는 다면 이것도 건축물에 해당 되는지요? 만약에 플라스틱 창고는 건축물이고, 종이 상자 창고는 건축물이 아니라면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답변은 이 글에다가 답변으로 달아주세요.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해양부 > 국토정책국 > 도시정책관 > 건축기획과

담당자 정승호

전화번호 02-2110-6202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nbsp;& nbsp;
      위 정착의 의미는 실질적, 임의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동안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고정되지 않는 플라스틱 조립 창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형태, 구조, 이용목적 등과 이동의 가능성 및 이동으로 인한 실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